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현충사관리소]

2016. 5.

문 화 재 청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1
2. 감사대상기관 .....	1
3. 감사중점 .....	1
4. 감사기간 및 인원 .....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주의) .....	3
2. 유물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	6
3.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 시 이행보증조치에 관한 사항(시정) .....	8
4. 세출예산 목적 외 집행에 관한 사항(주의) .....	10
5.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시정) .....	11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현충사관리소는 사적 제155호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곳으로 2011년 전시관과 교육관을 갖춘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건립하여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관한 각종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현충사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중점

직원 현황은 총 52명(정규직 29명, 비정규직 23명)이고, 2016년 예산은 3,170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내부 청렴도 취약 5개 분야(예산집행, 업무지시 등)를 포함한 회계감사와 더불어 주요 시설물 및 국유재산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실태,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3. 21. 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총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5. 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

# 현충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현충사관리소

내 용

현충사관리소는 국보 제76호 「난중일기」 7점 등 24점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 등 2개사와 아래와 같이 유물 정밀 복제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복제 대상 문화재	예정가격(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원)	계 약 자
용역	난중일기 2책, 임진장초 1책 서간첩 1책	51,073,000	'13.9.7. ~'14.3.31. 48,500,000	★★★★★★
용역	난중일기 5점 이순신관련 고문서 15점	98,450,000	'14.5.15. ~'14.12.16. 91,500,000	(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충사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계약을 추진하며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보존처리기술자 및 보존처리기능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라 판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대신 문화재수리 노임단가(보존처리)를 적용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총 2,148,578원을 과다 계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년도	고시된 인건비 1일 단가(원)				차액(원)		작업일수		과다계상액(원)	
	보존처리 기술자(A)	보존처리 기능자(B)	고급 기술자(C)	중급 기술자(D)	A-C	B-D	A	B	A	B
2013	203,802	174,250	199,093	175,860	4,709	-1,610	44	60	207,196	-96,600
2014	224,182	191,675	205,518	187,789	18,664	3,886	84	121	1,567,776	470,206
합 계									2,148,578	

또한, 2013년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4점의 과업량이 다름에도 소요 인력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년도	대상 문화재	규격	면 수	소요인력(인)		책정인건비(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2013	임진장초	33.5*46.0	168	11	15	4,855,572
	서간첩	24.5*39.7	18	11	15	4,855,572
	계사일기	28.2*24.9	62	11	15	4,855,572
	갑오일기	28.8*26.0	104	11	15	4,855,572
	소 계		352	44	60	19,422,288

## 조치할 사항

현충사관리소장은 예정가격 결정 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	○○서기 ◇◇◇	'13.5.25.~현재.	재무관보조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

# 현충사관리소

##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유물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현충사관리소

내 용

현충사관리소는 '이충무공 관련 소실 유물의 행방 조사를 위한 주변지역 방계 후손 탐문 조사' 중 ♣♣♣ 등 2인이 182건 221점(이충무공 4대손~13대손 등 후손 관련 고문서 154점 및 '무비지 필사본' 등 고전적 28건 67점)의 고문서 등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14.12.26. 해당 고문서 등에 대한 구입계획을 수립, 유물 평가회의('15.1.21.)를 거쳐 '15.2.3 총 38,000,000원에 182건 221점을 ♣♣♣ 등 2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7조는 박물관장은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해 3차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물취급규정」 제4조(유물대장)는 유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유물을 소장 관리하는 각 기관은 유물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현충사관리소는 유물구입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을 참고하여 유물구입을 실시하였음에도, 3차에 걸쳐 구입대상유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구입대상유물 평가를 1회만 실시하는 등 유물 구입 절차의 적정성 확보가 미흡하였고,

구입대상유물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구입 유물 중 충무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물은 없고, 충무공 후손 관련 고문서·전적 및 일반 고전적이며, 충무공 후손 관련 고문서 182건 중 134건은 특이성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고전적의 경우 28건 중 6건을 제외한 22건의 경우 한시집 등 일반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어, 특이성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 고문서 등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 및 구입 단가에 대한 개별 평가를 통해 구입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매도희망자의 의견대로 일괄 가격을 책정한 후 구매하였다.

또한 구입한 유물에 대한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16.3.24. 감사 시점 현재 이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현충사관리소장은 구입 유물에 대해 유물대장을 작성 비치하시고, 유물구입 관련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유물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현충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 시 이행보증조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현충사관리소

내 용

현충사관리소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3-1'(주차장 매점식당, 토지 302㎡ 건물 250.7㎡)에 대하여 ◆◆◆('15.11.1~'16.10.30.)에게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며,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인 10,567,120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였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는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충사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4회에 걸쳐 분납하게 하였으면,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현충사관리소장은 관련자에게 이행보증조치를 하시고, 향후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분납 시 관련 규정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현충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목적 외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현충사관리소

내 용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목적·지급기준·단가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충사관리소에서는 2015년 이순신장군 유물구입을 추진하면서 유물구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유물 구입(182건, 221점/38,000천 원)을 추진하였고, 유물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 「국가재정법」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또한 '13년 예산각목명세서 상 '주차장 권역정비 2차'(900,000천 원)로 반영된 사업비 일부를 당초 예산과 다르게 '현충사 관사 일원 정비 및 장비고 증축 공사'(209,600천 원)사업을 시행하였다.

### 조치할 사항

현충사관리소장은 향후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현충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현충사관리소

내 용

현충사관리소에서는 현충사(사적 제155호) 사적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15년에 '충무문 좌측 협문 보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단위:천원)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방법	시공사	준공금액	하자책임 보증기간
충무문 좌측 협문 보수공사	2015.5.15.	공개경쟁	(주)▲▲▲▲	51,380	2015.7.22. ~2018.7.21.
기념관 옥상방수 및 외부 흠다짐 벽 보강공사	2015.8.26.	공개경쟁	(주)●●●●	44,023	2015.9.23. ~2017.9.22

상기 공사 건에 자체종합감사기간 동안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충무문 좌측 협문 보수공사' 는 오른쪽 기둥에서 갈래현상이 발생하였고 '기념관 옥상방수 및 외부 흠다짐 벽 보강공사' 에서는 옥상 통기완충형 노출복합방수층 1/3정도가 변색 현상이 발생되어 추후 들뜸 현상으로 발생될 우려가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현충사관리소장은 「국가계약법」 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관련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